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5. 28.(화) / 총 20매(본문7)
부처 합동	국토교통부	녹색도시과	• 과장 안경호, 사무관 김의연 • ☎ (044) 201-3706, 3749
	기획재정부	지역예산과	• 과장 육현수, 사무관 김혜은 • ☎ (044) 215-7550, 7553
		국유재산 정책과	• 과장 김구년, 사무관 박인원 • ☎ (044) 215-5150, 5153
		공공혁신과	• 과장 김유정, 사무관 유영섭 • ☎ (044) 215-5610, 5611
	행정안전부	재정정책과	• 과장 이방무, 주무관 남소정 • ☎ (044) 205-3702, 3717
	환경부	자연생태 정책과	• 과장 유승광, 사무관 박정철 • ☎ (044) 201-7210, 7224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, 시민단체가 함께 **도시의 허파** 지켜낸다

- ◎ `20.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(340km²) 해소를 위해 추가대책 마련
- ◎ 지방채 발행시 이차지원을 최대 50% → 70%로 확대,
내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,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 유예
- ◎ 최대 220km²(서울시 면적의 36%)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
☞ 이 경우 1,100만 그루 나무조성, 연 400만톤 미세먼지 흡수효과 발생

- ① 정부가 지자체, 공공기관, 시민단체와 손잡고 내년 7월에 공원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.
- ② 200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도입된 후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,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(605km²)의 절반이 넘는 340km²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다.

-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 우선관리지역* 130km²을 선정된 후에 이에 대한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·추진 중에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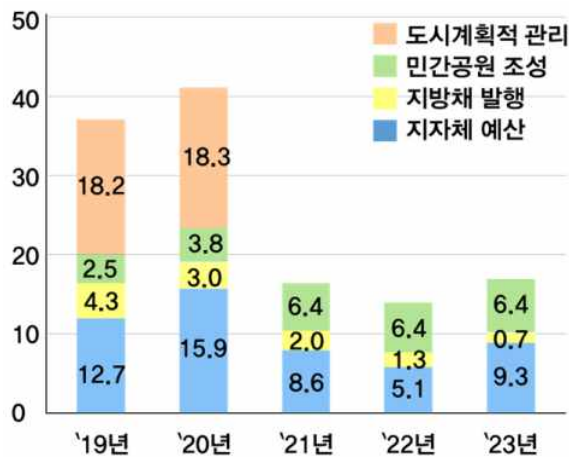
* 실효시 주민이용 제한 및 난개발이 우려되어 공원기능 유지가 곤란한 지역

** 비우선관리지역은 공법적·물리적 제약으로 실효시에도 공원기능 유지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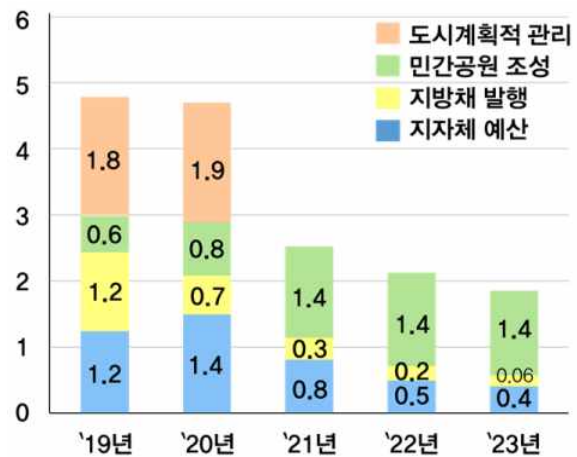
《 지자체 부문별 우선관리지역 공원조성 계획 》



《 연도별 조성계획, 면적(km²) 》



《 연도별 조성계획, 금액(조원) 》



- ③ 그러나,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공원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, 최근 미세먼지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민, 환경단체, 지자체 등에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.

- 이에 따라, 정부는 지난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,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하였다.

- ④ 정부가 5.28(화)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「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」은 다음과 같다.

1

기존 대책의 실효성 제고

① 지방채 발행여건 개선

-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현행 최대 50%까지 지원에서 광역시·도는 70%까지 확대한다.
- 동시에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, 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*한다.

* 현재 채무비율 25% 초과시 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 허용

②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

- 기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공공성이 높고*, 추진기간도 짧은 (1.5년→1년 이내)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조성을 추진한다.

* 무주택자 우선 공급, 청년·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%이하 공급 등

- LH가 자체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가 요청한 대상지를 검토하여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10개소 내외 조성하는 동시에,
-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지연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LH가 승계하여 추진*한다.

* 이를 위해 사업공고 후 3개월 내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시 제안 효력이 상실 되도록 「공원녹지법」 시행령 개정 추진

③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의 실효성 제고

- 도시자연공원구역*은 행위제한으로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원일몰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,

*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여가·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

-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가능한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.
- 또한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 목적의 지방채 발행과 동일*하게 이자를 지원하여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, 조세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**을 유도하여 토지 소유자의 부담도 최소화한다.

* '19~'23년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기존 지원범위 내 이자지원

** 서울시는 '19년부터 재산세 50% 감면중

2

2019년 신규 대책

① 국공유지 실효 유예

-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%에 해당하는 90km²의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 유예하되, 시가화된 구역 등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는 실효시킬 계획이다.
- 정부는 연말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공원기능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고, 지자체의 공원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여 유예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.

② 토지은행 활용 제고

- LH 토지은행은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은행이 공공사업 예정 토지를 미리 매입·비축하고,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써,
 - 재정여건이 취약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토지은행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.

③ 공원조성절차 단축

- 정부는 실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 시 필요한 심의·평가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.
 -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*이 엄격하고, 환경영향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'20.7월 이전까지 공원조성(실시계획인가)이 불확실한 공원조성 사업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,
 - * 소유자 동의요건, 잔여지 매수기준 등
 -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,
 -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협의하고, 필요시 전략·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④ 공원조성 방식 다양화

- 정부는 대피소, 소화·급수시설 등 대피 인프라를 갖춘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공원종류를 다양화하고, 시민단체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공원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⑥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

○ 정부는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.

- 먼저,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**합동평가***시 '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지자체 성과'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,

*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우수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지급

-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,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 지자체 지원사업 공모선정 시 사업내용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을 포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, 도시대상 선정 시에도 공원조성 노력도를 반영한다.

○ 또한 우수공원인증제*를 도입하여 연말부터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에 대한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공원의 질적 향상 유도는 물론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.

* 해외사례 : 영국 정부는 녹지공간을 평가해 우수 공간에 녹색깃발상(Green Flag Award, GFA) 수여 → 스페인, 호주, 네덜란드 등에서도 영국의 GFA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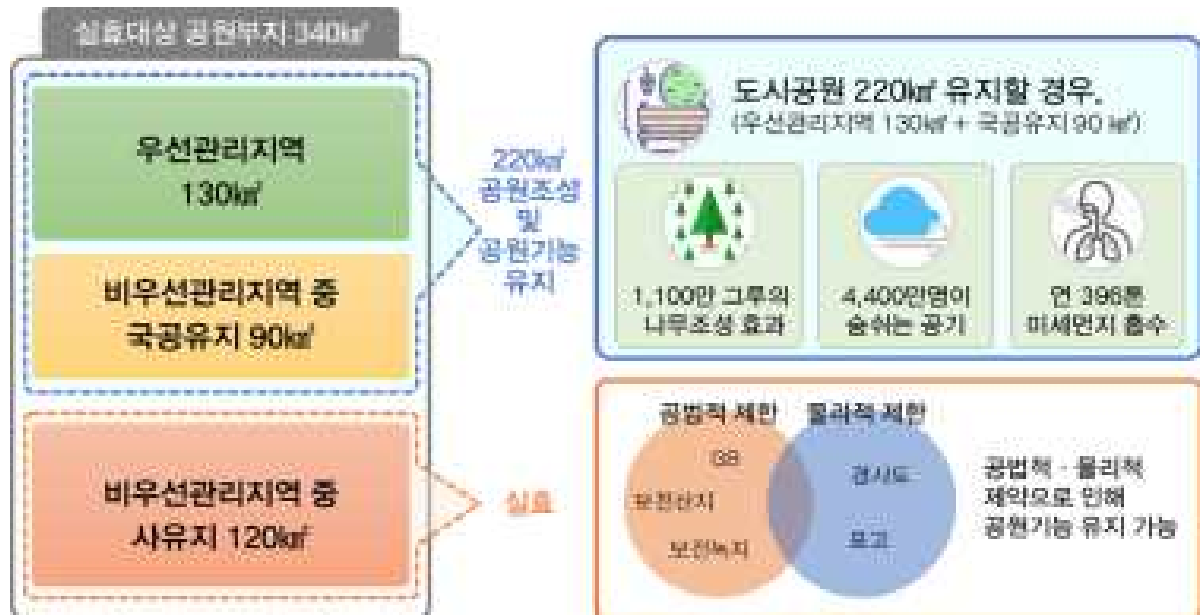
3

기대효과

□ 정부는 추가대책을 통해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km² 중 우선 관리지역(130km²)에 대한 공원조성과 국공유지(90km²) 실효유예로 최대 220km²에 대한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

○ 나머지 비우선관리지역 120km² 또한 물리적(표고, 경사도 등)·공법적(GB, 보전녹지·산지 등) 제한으로 인해, 실효되더라도 공원기능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- 이에 따라 총 220km²가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, 1,100만 그루의 나무 조성, 4,400만명이 1년 간 숨쉬는 공기 제공,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

- 정부는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자,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,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적극 협업하고, 지속적으로 공원조성 현황을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김의연 사무관(☎ 044-201-374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

2019. 5. 28

관 계 부 처
합 동

순 서

I . 그간의 추진경위	1
1. 장기미집행공원 현황	1
2. '18.4월 대책과 추진실적	1
II . 추진실적 평가	3
III .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추가대책	4
1. 기존 대책의 실효성 제고	5
2. '19년 신규 대책	7
IV . 기대효과	10
《참고》 세부 추진계획	11

I. 그간의 추진경위

1

장기미집행공원 현황

-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* 도입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원 조성 노력으로 실효대상 공원부지는 꾸준히 감소

* 공원부지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 결정효력이 상실되는 규정 도입('00.7월)

- 공원조성 면적은 '13년 404km²에서 '18년 474km²로 70km² 늘어난 반면, '20.7월 실효대상 공원면적은 동 기간 476km²→340km²로 136km² 축소

* 공원조성과 실효대상 공원면적의 차이인 66km²은 동 기간 동안 공원 결정 해제 면적

《 연도별 공원 결정 및 미조성·실효 면적 》



2

'18.4월 대책과 추진실적

- '18.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해소방안 발표
- 후속조치로 '18.12월에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km²(서울시 면적 605km²의 절반 이상) 중에 우선관리지역* 130km²를 선정하고, 이에 대해 '19.3월 지자체별 향후 5년간의 공원조성계획 마련

* 주민이 실제 이용하는 시설로 실효시 주민이용 제한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

** 비우선관리지역은 공법적·물리적 제약으로 실효시에도 공원기능 유지 가능

□ 주요 수단별 5년간 공원조성 계획

- ① (지방재정으로 매입) 향후 5년간 총 4.3조원('19년 1.1조원)을 투입하여 우선관리지역 중 40%에 해당하는 51.6km²* 매입예정

* 최근 3년간 지자체 재정을 통한 공원부지 매입규모(연평균 5,335억원)의 2배 수준

- ② (지방채 발행으로 매입) 향후 5년간 총 2.4조('19년 1.2조, '19년 한해 지자체 전체 지방채 발행액의 1/4 수준)를 발행하여 11.3km² 매입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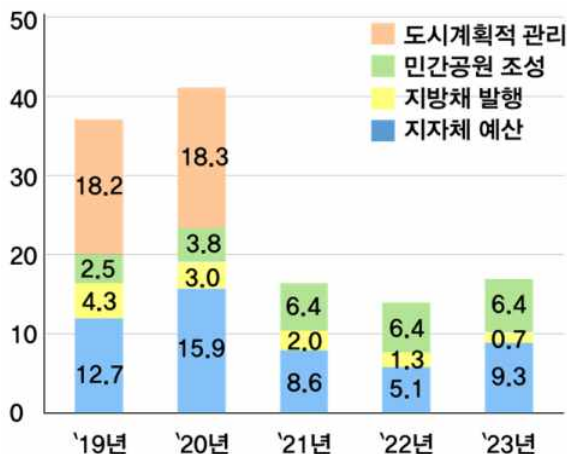
- ③ (민간공원 조성) 「공원녹지법」 상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를 통해 현재 총 79개소, 26km² 조성 중

- ④ (도시계획적 관리) 우선관리지역 중 지자체가 조성하거나 민간 활력을 통해 조성하는 부지를 제외한 부지 37km²은 도시자연공원구역, 보전녹지, 경관지구,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공원기능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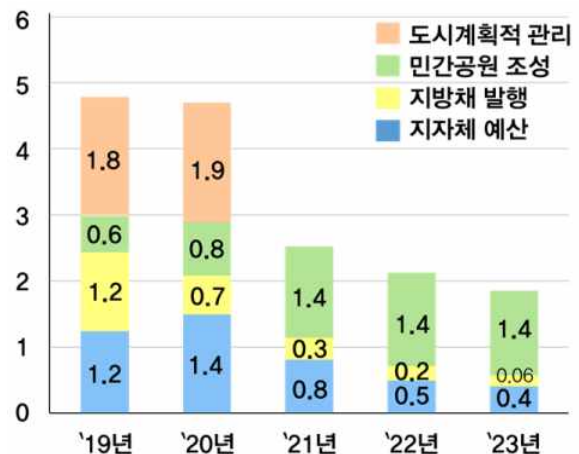
《 지자체 부문별 우선관리지역 공원조성 계획 》



《 연도별 조성계획, 면적(km²) 》



《 연도별 조성계획, 금액(조원) 》



II. 추진실적 평가

- 지자체 계획을 분석한 결과, 우선관리지역 130km²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당초 목표 달성에 일부 차질 우려
 - (지방재정·지방채) 공원해제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감,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매입단가 상승을 고려 시 부지매입에 애로 예상
 - * 道 지역은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등으로 인해 지방채 발행여력도 부족
 - (민간공원 조성) 장기간 절차소요, 주민반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일부 공원*은 실효 전까지 공원조성 여부 불투명
 - * 예 : 대전 매봉공원, 청주 구룡공원 등 주민대표·시민단체 반발로 장기 지연
 - (도시계획적 관리) 지자체 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 등은 개발을 전제로 하여 공원기능 유지에 한계가 있고,
 -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공원기능 유지효과가 크고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도 보장되나 서울 외 지자체는 지정에 소극적
- 한편, 시민·환경단체와 지자체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정부의 역할 확대를 지속 요구 중이며,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현안인 미세먼지 해소 차원에서 공공 주도의 공원조성 요구 확산
 - (우선관리지역) 부족한 지자체 재정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, LH 등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 공원조성 역할 요구
 - (국공유지) 지자체는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도 어렵다는 점에서 사유재산권 침해우려가 없는 국공유지는 실효제외 요청

▶ 이에 정부는 '18.4월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,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

Ⅲ.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추가대책

'20.7월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는

정부 · 지자체 · 시민단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

목표

우선관리지역 및 국공유지를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

정 책 방 향

기존 대책 보완

지방채 발행여건 개선



-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 확대 : 광역시·도 70%까지 확대
- 지방채 발행한도 예외 허용 : 한도초과 발행시 협의 주요단체 지정 예외

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

LH

- LH 신규부지 발굴 : 10개소 내외 조성
- 기존 민간 추진사업 승계

도시계획적 관리수단 실효성 제고



-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개선 : 행위제한 완화
- 지자체 재원부담 및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

신 규 대 책

국공유지 실효 유예



- 현지조사를 거쳐 국공유지 10년 간 실효유예
- * 지자체의 관리실태를 점검해 10년 후 유예연장 검토

토지은행 활용도 제고



- LH 토지은행에서 부지 우선 매입 · 비축 후 지자체 분할상환

공원조성 절차 단축



-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기준 합리화
-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

공원 조성방식 다양화



- 방재공원 등 공원유형 신설
- 시민단체 · 기업 주도의 공원조성 유도

공원조성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



- 지자체 합동평가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노력 반영
- 공원조성실적 우수지자체 포상

① 지방채 발행여건 개선

①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 확대

- (현재) 5년간('19~'23년)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발행일부터 5년간 최대 50%까지 이자지원 중('19~'27년 재정소요)
- (개선) 광역시·도는 이자지원 보조율을 70%로 확대

② 지방채 발행한도 예외 허용

- (현재)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*,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** 등으로 인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지방채 추가발행 애로

* (총액한도제) 연간발행한도는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전전연도 예산액의 10% 이내

** (재정위기 관리제도) 누적 채무비율이 25% 이상 시 주의단체로 지정 가능

- (개선) 한도초과 발행시 승인→협의제로 완화하고,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채무비율 25% 초과시에도 주의단체 지정 예외 추진

②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

- LH 공공사업*을 통한 공원 조성으로 공공성을 강화**하고,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비 추진기간도 단축(평균 1.5년 → 1년 이내)

*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제도 활용

** 무주택자 우선 공급, 청년·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% 이하 공급 등

① 내 신규사업 발굴

- LH가 자체 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 요청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분석, 현지 실사를 거쳐 10개소 내외 공원 조성

② 기존 민간공원 특례사업 승계

-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사업 중 조성곤란이 예상되거나 자연 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사업성 검토 후 LH가 승계하여 공원 조성
- 이를 위해 민간공원 사업공고 후 3개월 내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시 제안 효력이 상실되도록 법령 개정 추진(「공원녹지법」 시행령)

《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절차 》



③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실효성 제고

①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개선

- (현재)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건물 건축, 용도변경 등이 제한 되는 등 행위제한*이 엄격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약

* 현재는 공공용 시설 · 공익시설 · 임시건축물 · 여가용 시설 등만 설치가능

- (개선)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한 여가시설과 공원 ·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종류를 확대하여 행위제한 완화 추진

* 환경적 영향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한 건축물 · 공작물 등을 확대(「공원녹지법」 시행령 개정)

② 지자체 자원부담 완화

-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시에도 공원부지 매입 시와 동일*하게 이자지원

* '19~'23년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기존 지원범위 내 이자지원

③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

- 1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에 준하여*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부지도 재산세 감면 조례 마련 유도('19년부터 서울시는 50% 감면 중)

*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부지의 경우 재산세 50% 감면

2

'19년 신규대책

① 국공유지 실효 유예

- (현황) '20.7월 실효대상 공원부지중 국공유지*는 전체의 25%에 해당하는 90km²로서, 지자체에서 비우선 관리지역으로 분류

* 국유지 소유기관 : 산림청 55%, 국방부 11%, 국토부 11%, 기재부 4%, 기타 11%

- (추진방향) ①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 유예하되 공원기능 유지가 어려운 일부(시가화된 구역 등)는 실효, ②지자체 공원조성 유도를 위해 10년 실효유예 후 지자체의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 검토

- (추진절차) ①실효유예 대상 국공유지 선정기준을 마련('19.6)하고,
②국토부·지자체·LH가 현지조사('19.7~11월) 시행 후,
③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실효 유예할 국공유지 선정('19.12)

* 국공유지 현장조사·관리를 위해 필요시 LH 인력충원 검토

② 토지은행 활용 제고

- (현황)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재정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원조성에 애로
- (추진방안) LH 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·비축(3년간)하고,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
 - * '19년에는 5개 지자체가 신청한 총 2.1km²의 공원 부지를 비축사업으로 선정
 - ** 지방재정법의 보증채무부담 절차 준수(지방의회 사전 동의, 지자체의 확약 공문), 「공공토지비축법」 개정 추진 등 지자체의 상환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병행

③ 공원조성 절차 단축

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기준 합리화

- (현황)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시에도 일반적 수용재결 절차(소유자 동의요건, 잔여지 매수기준 등)를 적용하여 사업지연 우려
 - * (소유자 동의요건) 실시계획인가 전 토지소유자의 75% 사전동의 필요
 - ** (잔여지 매수기준) 잔여면적 330m² 이하, 종래 목적으로 사용 곤란한 토지 등
- (추진방안)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, 토지 확보 등에 관한 별도 심의기준을 마련해 적기 공원조성 추진

②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

- (현황) 민간공원 조성시 전략 및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, 초기 단계 민간공원 사업은 내년 7월 실효 전까지 실시 계획인가를 얻지 못할 우려
 - * (절차) 전략환경영향평가 → 일반환경영향평가 → 실시계획인가
- (추진방안)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평가서를 우선 협의(환경부)하고, 필요시 전략 및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평가*하는 방안도 추진
 - * 용도지역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(국토부)

4 공원조성 방식 다양화

- 대피소, 소화시설 등 대피 인프라를 갖춘 방재공원을 신설*하고, 시민단체·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공원조성을 적극 유도**

* 「공원녹지법」 개정을 통해 공원유형에 방재공원 신설('19.下)

** 예 : 시민단체·기업이 공원 조성시 해당 단체명을 공원이름으로 사용

- 시민모금·기부 등 국민신탁제도를 통한 공원조성 확대 추진

* 민간 국민신탁단체도 법정법인과 동일한 혜택 적용(「국민신탁법」 개정, '19.下)

5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

1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반영

- 「정부업무평가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*에 '장기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한 지자체 성과'를 평가지표에 반영 추진

*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급

2 지자체 공모사업 및 도시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

- 지자체 지원사업 선정 시* 공원조성 노력도에 가점을 부여하고, 도시대상 선정 시에도 공원조성 노력 반영 비중을 크게 상향

* 지역개발사업(지역수요맞춤지원, 투자선도지구 사업), 도시재생사업 등

3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및 우수도시 시상

-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과 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공원 인증제*를 연내에 도입

* 해외사례 : 영국 정부는 녹지공간을 평가해 우수 공간에 녹색깃발상(GFA) 수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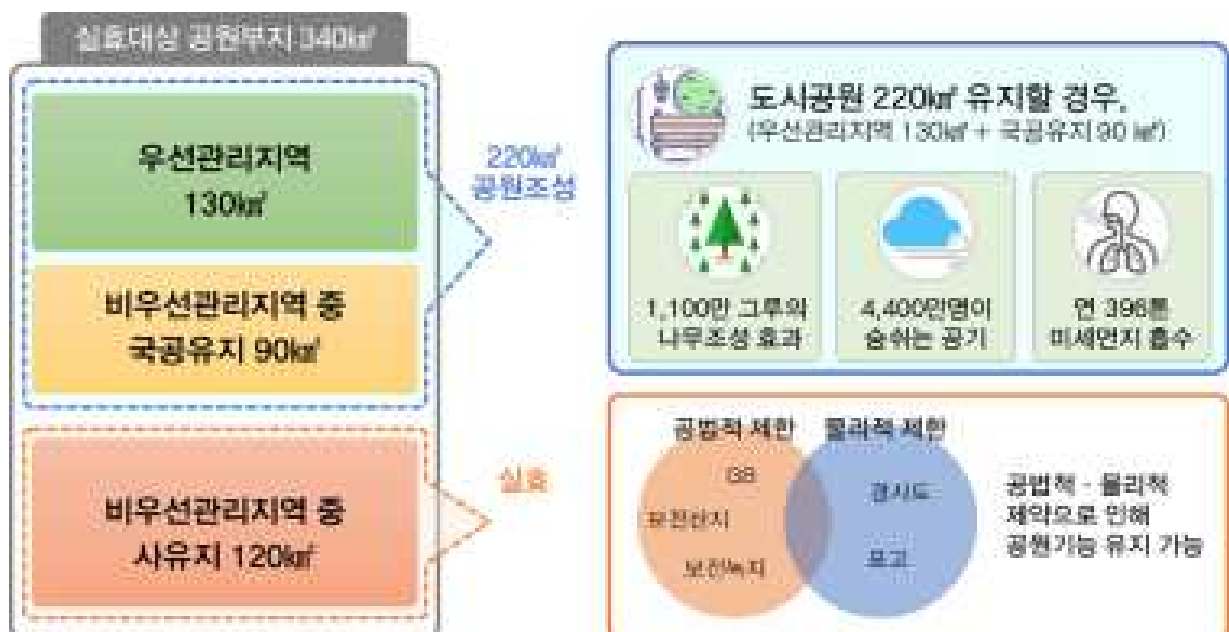
-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'(가칭)우수녹색도시' 시상(국무총리·국토부장관상 등 추진)

IV. 기대효과

-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, 시민단체, 기업이 협업하여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 조성 노력을 획기적으로 제고
- 실효대상 부지유형별 공원조성 계획
 - (우선관리지역) 130km² 전체를 공원조성 추진
 - (비우선관리지역 중 국공유지) 90km² 중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를 공원조성 추진
 - (비우선관리지역 중 사유지) 120km²는 물리적 제한(경사도 등)·공법적 제한(GB 등) 등으로 인해 실효되더라도 공원기능이 유지될 전망

- ◆ 우선관리지역 130km², 국공유지 90km² 등 총 220km²를 공원 조성시,
 - ⇒ 1,1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, 4,400만명이 1년 간 숨쉬는 공기 제공,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 발생

《「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」 기대효과 》



참고

「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」 세부 추진계획

추진과제	조치사항	관련기관	일정
1. 기존대책 보완방안			
①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			
① 이자지원 규모 확대	▪ 예산안 반영	기재부	'19.~
② 발행한도 예외 허용	▪ 행안부 심의시 예외 허용	행안부	'19.上
② 민간공원 조성시 LH 역할 확대			
① LH 신규부지 발굴	▪ LH ↔ 지자체 협의	LH, 지자체	'19.~
② 기존 민간 추진사업 승계	▪ LH ↔ 지자체 협의	LH, 지자체	'19.上
	▪ 「공원녹지법」 시행령 개정	국토부	'19.下
③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활성화			
① 지자체 재원부담 완화	▪ 예산안 반영	기재부	'20.~
②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	▪ 조례 개정	지자체	~'20.上
③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	▪ 「공원녹지법」 개정	국토부	~'20.上
2. 신규대책			
① 국공유지 실효 유예			
▪ 공원기능 유지 필요부지 조사 등	▪ 실효제외 기준마련	국토부·기재부,	'19.上
	▪ 실효제외 대상 확정	지자체	'19.下
	▪ 국토계획법령 등 개정	국토부	'19.下
② 토지은행 활용			
▪ LH 토지은행 매입·비축	▪ 비축토지심의위원회 개최 ▪ 「공공토지비축법」 등 개정	국토부·기재부, LH	'19.上 '19.下
③ 공원조성 절차 단축			
① 중토위 의견청취 심의 간소화	▪ 심의 별도기준 마련	중토위	'19.上
② 환경영향평가 간소화	▪ 공원조성사업 우선 협의 등	환경부	'19.上
④ 공원조성방식 다양화			
▪ 공원 유형 다양화 및 시민단체·기업공원 조성 유도	▪ 「공원녹지법」 개정	국토부	'19.下
	▪ 제도마련, 설명회 개최		'19.上
⑤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			
①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	▪ 평가기준 심의	행안부	'19.上
② 지자체 지원사업 가점 부여	▪ 평가기준 반영	국토부	'19.上
③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	▪ 제도마련 및 선정	국토부	'19.下